

예산총칙

2025년도 본예산

제 1 조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1,484,985,112	44,549,553
일반회계		1,285,726,075	38,571,782
특별회계		199,259,037	5,977,771
	공기업특별회계	181,954,734	5,458,642
	상수도사업특별회계	41,833,379	1,255,001
	하수도사업특별회계	54,221,355	1,626,641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85,900,000	2,577,000
	기타특별회계	17,304,303	519,129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314,500	9,435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5,740,645	172,219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3,942,486	118,275
	수질개선특별회계	7,114,072	213,422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192,600	5,778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 사업은 "해당없음"

제 4 조 계속비 사업은 "해당없음"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없음"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1,252,460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85,9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 2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른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